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309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강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5. 4.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522,581원 및 그 중 51,552,467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2021. 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21. 6. 4.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관)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라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소외 (주)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6,3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과목	대출기관
2019. 9. 5.	2024. 9. 5.	63,000,000원	일반자금대출	(주)D E금융센터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20. 9. 8.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주)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1. 2. 9. 대출원리금 51,939,2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데, 그 이율은 2021. 2. 9.부터 2021. 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돈 중 416,781원을 회수하였고, 회수한 416,781원에 대한 2021. 2. 9.부터 2021. 2. 9.까지 1일간의 확정손해금 114원($416,781\text{원} \times 10/100 \times 1/365$)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인 2020. 5. 2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0. 5. 22. 접수 제54687호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3,520만 원으로 된 F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G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A은 (주)D에 대한 57,166,000원의 채무 외에 H회사에 대하여 23,560,000원, I회사에 대하여 13,893,000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38,457,801원, K 주식회사에 대하여 13,417,400원, L에 대하여 62,213,000원 등 합계 4억 9,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M, N(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억 9,800만 원이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21. 12. 10. 매각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3,900만 원은 원고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부산지방법원 2021카단539363)에 의해 전액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51,522,467원과 확정손해금 114원 합계 51,522,581원(= 51,522,467원 + 114원) 및 그 중 51,522,467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2021. 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1. 6. 4.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②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D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연체하고 있었고,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넉 달도 지나지 않아 D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D에 보증금을 지급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최고 4억 9,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로서는 그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A와 10년 전부터 계모임을 통해 알던 사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인 2019. 11. 22. 자신의 동생인 O를 통해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A이 코로나 사태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약속한 지급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2020. 5.경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고 변제기는 그로부터 5개월 후로 새로이 정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 A이 코로나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거나 피고 B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오히려 피고 B의 악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B는 3,9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해 위 배당금이 전액 공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900만 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관)에 대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은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외에도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존재하므로,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피고 A에게 양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의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구한다고 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성은

별지